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항공 분야 소방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력경쟁 채용시험 중 항공 분야 정비사의 응시자격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,

이원화 되어 있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산정기준을 일원화하여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을 명확히 하고,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단서 중 “조종사”를 “조종사 및 정비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“공개경쟁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,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있어서는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”을 “최종시험예정일”로 한다.

제28조제5항 중 “제3항 및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심사한 결과”를 “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류에”로, “요구하여야 하며,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시험시행 7일전에 시험일시·장소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시험요구기관의 장을 거쳐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”를 “요구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별표 1의 순번 1의 비고란 중 “종합병원장 발행”을 “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”으로 한다.

별표 3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계급	국가·지방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	경찰공무원	군인	교육공무원			공공기관 등
				초·중·고등학교 교원	전문대학교원	4년제대학 교원	

별표 3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위 표의 공공기관 등이란 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별표 6 비고 제2호 중 “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”를 “최종시험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그 확인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.

별표 6 비고 제3호 중 “면접시험일”을 “최종시험예정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3조(응시자격등의 기준)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(이하 “경력경쟁채용시험등”이라 한다)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항공 분야 조종사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. ②·③ (생략) ④·⑤ 삭제 ⑥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경쟁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,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있어서는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이 속한 연도에 영 별표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. 다만, 영 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	제23조(응시자격등의 기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----- ----- <u>조종사 및 정비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----- ②·③ (현행과 같음) ⑥----- ----- <u>최종시험예정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----- -----

초과하는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. ⑦ ~ ⑩ (생략) 제28조(응시서류의 제출등) ① ~ ④ (생략) ⑤ 시험실시권자는 <u>제3항 및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,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시험시행 7일전에 시험일시·장소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시험요구기관의 장을 거쳐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	----- -----. ⑦ ~ ⑩ (현행과 같음) 제28조(응시서류의 제출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<u>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류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요구할 수 있다.</u>
--	---